

제주대학교 장학금 지급 지침

시행 : 2020. 1. 21.

I. 목 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II. 기본방침

1. 장학금 지급을 통한 학생의 복지 구현과 포상 격려
2. 가계곤란 학생과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업 안정화 도모
3. 우수인재 양성 및 면학분위기 조성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기여

III. 장학금 재원

1. 대학회계

가. 장학금 재원의 확보(법정기준)

- 1) 입학금과 수업료 I : 세입총액의 30%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조 제3항
- 2) 수업료 II : 세입총액의 10.8%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조 제2항
- 3) 국가장학금 II 유형 확보를 위한 추가분

나. 재원의 배분

- 1) 학부 : 성적우수 33%, 복지(저소득층*) 35%, 근로 17%, 특별 15%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총감면액의 30% 이상 배분
- 2) 대학원(의학전문제외) : 성적우수 25%, 복지(저소득층) 25%, 근로 15%, 특별 35%
※ 배분비율은 장학금 규모 및 운영형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체기준에 따라 배분비율을 정함.
- 3) 미래융합대학 등록금의 16% 이상은 해당 재학생 장학금으로 배분

2. 대학발전기금 : 발전기금재단에 기탁한 장학기금 과실금 및 직접사용 기금
3. 교외 지원금 : 국가, 교외 단체, 개인 독지가 등이 지원하는 재원

IV. 장학금 종류

1. 교내 장학금

가. 성적우수장학금 : 입학성적우수, 학업(전형)성적우수

나. 복지장학금 : 소득8분위 이내 저소득층 대상

다. 특별장학금

(학부) 체육특기자, 경시대회우수, 국가유공, 새터민, 재난·재해, 비교과우수, 국가고시, 다문화가족, 우수봉사, 우수학생기자, 홍보대사, 장애학생도우미, 학생회 임원, 학군사관후보생 등

(학부, 대학원) 외국인, 장애학생, 가족장학금, 운영위원회

(대학원) 원우회 임원, 학석사 연계

다. 근로장학금 : 교내근로(교육연구보조 포함)

2. 발전기금 장학금

가. 기금설계 : 입학우수특별장학, 학술교류우수, 외국어우수, 연구성과 우수 등

나. 기금지정 : 이시향, 고추월 등 기탁자 지정 장학금

다. 기금연계 : 외부 장학금 중 발전기금재단을 경유하는 장학금

3. 교외 장학금

가. 국가지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국가교육근로, 국가기관(사업)장학금

나.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지방자치단체(사업)장학금

다. 사설 및 기타장학금 : 사설재단장학금, 개인 출연 장학금 등

V. 장학생 선발 원칙

1. 일반원칙

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나. 교내 장학생 선발 및 교외 장학생 추천대상은 품행이 방정하고 정규과정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다. 학부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최종학년은 1과목 이상 이수)인 학생. 단,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9학점 이상

라. 직전학기 성적이 2.7점(4.3 만점) 이상인 학생

※ 복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등의 성격기준은 장학금 특성 및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

마. 선발 우선순위(별도의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 ①직전학기 평점평균 ②전체학기 평점평균 ③직전학기 취득학점 ④전체학기 취득학점

바. 이중수혜 금지

- 장학금 이중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
- 이중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 교외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 적용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과(학부)에서 결정
- 이중수혜 금지 적용 예외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업무보조 등 조건부로 수혜하는 경우
 - 장학금 지급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장학생 선발 제외대상 및 자격 상실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장학생 선발조건을 달리 정하거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직전학기에 성적 경고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해제된 후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① 근신 : 1개 학기, ② 유기정학 : 2개 학기 ③ 무기정학 : 3개 학기)
- 직전학기 중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 시킨 자
- 수업연한 초과자
- 휴학생. 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 유지
- 편입생은 편입 당해 학기 성적우수 제외. 단 특별장학생은 예외
- 학생경력관리프로그램 미등록자(학부생)
- 기타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2. 교내장학

- 일반원칙에 의거 선발
-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발전기금 장학

- 발전기금 장학생은 출연용도 및 성격에 따라 따로 정함
-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일반원칙 적용

4. 교외장학

- 가. 국가지원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또는 장학금 지원 기관의 지침에 따름
- 나.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름
- 다. 사설단체 및 기타 장학금 : 장학금 지원 기관, 단체, 개인의 지침에 따름
- 라.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일반원칙 준용

Ⅵ. 장학금 등급 및 선발기준

1. 학 부

가. 성적우수(입학성적우수, 학업성적우수)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입학성적 우수 특별*은 발전기금 재원임	A+특별* (전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전형총점 최고득점자 각 1명 ○ 지급기간 : 수업연한 ○ 특별장학금(1회) : 1년간 월 50만원 기준, 10월중 600만원 지급
	A+특별* (수능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수학, 영어 수능성적이 모두 1등급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디자인대학은 국어, 영어 수능성적이 1등급인 학생 ○ 선발인원 : 수시 5명, 정시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학별 입학정원의 15% 이내 선발 ○ 선발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2과목) 수능성적이 모두 1등급인 학생 (2순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수능성적이 모두 1등급인 학생 (3순위) 국어, 수학, 탐구(2과목 평균) 3개 영역의 수능성적 백분위 합이 높은 학생 (4순위) 국어, 수학 2개 영역의 수능성적 백분위 합이 높은 학생 (5순위) 국어 수능성적 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 지급기간 : 수업연한 ○ 특별장학금(1회) : 1년간 월 20만원 기준, 10월중 240만원 지급
	A+특별* (단과대학 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학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전형총점 최고득점자 각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융합대학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2명 선발 ○ 전체수석이 배출된 학과(학부) 이외의 학과(학부)에서 선발 (교육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예외) ○ 수시모집 단과대학수석이 배출된 학과(학부) 이외의 학과(학부)에서 정시모집 단과대학수석 선발(교육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예외) ○ 입학 후, 전과 등으로 소속대학이 변경된 경우 제외. 단, 교육편제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예외 ○ 지급기간 : 수업연한 ○ 특별장학금(1회) : 1년간 월 20만원 기준, 10월중 240만원 지급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입학성적우수 선발 및 자격유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이 미등록한 경우 차순위자를 대체 선발하지 않음. ○ 입학 후 1년(1,2학기) 이내 휴학한 경우, 복학 이후 제외 ○ 특별장학금은 제1학기 성적 무관 지급 ○ 재학 학기성적 3.1/4.3 이상 유지
학업(전형) 성적 우수	A, C	<p><신입생 : 전형성적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 별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여 선발 단. 미래융합대학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선발 - 모집인원에 비례하여 A급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 - 전형총점이 높은 학생 순 선발 <p><재학생 : 학업성적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학(학부·학과·전공) 별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성적이 2.7/4.3 이상인 자 - 단과대학별로 정하는 장학생 선발기준에는 교과목 성적 이외에 학생경력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할 수 있음. - LINC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또는 우리 대학의 중점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참여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단과대학 별 등록예정인원 수(외국인과 초과 학기자 제외)에 비례하여 A, C급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 - 배정된 A급을 C급으로 조정하여 2배 수 선발 가능 ○ 복학생은 당해 학기에 선발 제외
신입생 전형총점이 동점일 경우 성적우수 장학 선발순위		<p><수시합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3학년 학생부 성적 (2순위) 2학년 학생부 성적 (3순위) 1학년 학생부 성적 <p><정시합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수능 성적 환산총점 (2순위) 학생부 성적 환산총점 <p>※ 위 기준 이외의 사항은 각 등급별 기준에 따름.</p>

나. 복지(저소득층 지원)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저소득층* 자녀지원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잔액의 100% 지원 ○ 성적이 2.0/4.3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단,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 성적 조정 가능 ○ 소득8분위 이내인 자 또는 기타 경제사정 곤란자

다. 특별장학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체육 특기자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기준에 따라, 체육진흥센터 소장이 체육특기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며 추천한 학기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이 1.8/4.3 이상인 자 - 예체능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부생 - 국제규모대회는 종목별 5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 -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5개팀 이상 참가한 대회 - 단체전 입상자는 정규인원만 인정 ○ 입학 후 체육활동 중단자는 제외
	A	<p><신입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체능특기자전형 중 체육특기 입학자 : 1~2학년 동안 지급 단,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 한함 <p><재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체능특기자전형 체육특기 입학자가 재학기간 중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1·2위 입상 또는 같은 해에 3위 2회 이상 입상한 경우 2개 학기 내 지급
	B	<p><재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체능특기자전형 입학자가 재학기간 중 전국규모이상 대회에서 3위 입상한 경우 2개 학기 내 지급
경시대회 우수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속 대학 학장이 학술·예술·체육분야 경시대회에서 입상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며 추천한 학기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성적이 2.7/4.3 이상인 자 - 국제규모대회는 종목별, 부문별 각각 5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 -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부문별 5개 시·도 이상 참가한 대회 - 대회 3위 이내 입상자에 한함 - 단체입상은 정규멤버의 3분의 1 이내 인원만 인정. 다만 체육분야에서 개인전이 없는 단체전(축구 등) 입상은 정규멤버에 한하여 모두 인정 - 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주관대회에 한하며, 생활체육 분야는 제외 ○ 입학 후 1년 이내에 휴학한 경우 복학 학기부터 제외
	A+특별* (입학우수)	<p><신입생 : 예술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분야 학생으로서 고교재학 중 국제규모 3위 이내 입상자는 수업연한 동안 지급 ○ 특별장학금(1회) : 1년간 월 20만원 기준, 10월중 240만원 지급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A (성적우수)	<p><신입생 : 예술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분야 학생으로서 고교재학 중 전국규모 3위 이내 입상자는 2개 학기 지급 <p><재학생 : 학술·예술·체육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모 3위 이내 입상자는 4개 학기 지급 ○ 전국규모 1위 입상자는 2개 학기 지급
	B (성적우수)	<p><재학생 : 학술·예술·체육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전국규모 경시대회 2·3위 입상자는 2개 학기 지급
국가유공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 장학범위, 장학금액, 장학기간, 장학조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신청서류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새터민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 장학범위, 장학금액, 장학기간, 장학조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신청서류 :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외국인*	A C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본부의 선발 기준에 의함 ○ 외국 국적을 갖고 입학한 학부생 중 한국어능력과 학부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
재난·재해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로 긴급히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장학범위, 장학금액, 장학기간, 장학조건 등은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
가족장학*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성적이 2.7/4.3 이상인 자 - 등록금 액수가 많은 학생으로 선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B, E	○ 가족 재학인원이 3명인 경우 B급 1명, E급 1명 선발
	E	○ 가족 재학인원이 2명인 경우 E급 1명 선발
비교과 교육과정 우수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능력,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마일리지 우수 ○ 장학금은 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국가고시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로서 성적이 2.7/4.3 이상인 자 - 1차 합격자 : 2개 학기 지급 - 최종 합격자 : 수업연한까지 지급 ○ 신청서 제출 학기부터 적용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합격증 등 증빙서류
다문화가족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족구성원인 학부생 ○ 외국인 본인, 외국인 배우자, 출생 시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성적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장학금을 차등 지급 ○ 신청서 제출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본인은 성적이 2.4/4.3 이상인 자 ○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외국인 출생자녀로서 성적 3.0/4.3 이상인 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서 성적이 3.0/4.3 이상인 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본인은 성적이 2.0/4.3 이상인 자 ○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외국인 출생자녀로서 성적 2.7/4.3 이상인 자 ○ 한국인 부모 자녀로서 성적 2.7/4.3 이상인 자 ○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장애학생*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정도와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원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성적 1.4/4.3 이상인 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성적 2.4/4.3 이상인 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신입생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성적 1.0/4.3 이상인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성적 2.0/4.3 이상인 자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우수봉사	A	○ 우수봉사 학생 중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 2.7/4.3 이상 자로 학기별 2명 이내
우수 학생기자	A	○ 학생기자 중 신문방송사 주간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 2.7/4.3 이상인 자 학기별 3명 이내
홍보대사	E	○ 홍보대사 학생 중 홍보출판문화원장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 2.7/4.3 이상인 자로 학기별 추천
장애학생 도우미	A C	○ 장애학생도우미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 2.7/4.3 이상인 자 - 학기별 A급 3명 또는 C급 6명 이내 선발
학생회 임원	A	○ 4대 학생자치기구* 임원 중 학생처장이 학기별 추천 - 성적이 2.7/4.3 이상인 자로 7명 이내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B	○ 단과대학(야간강좌부 포함)별 학장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이 2.7/4.3 이상인 자로 학기별 각 1명 선발
학군사관 후보생	A, C	○ 학군사관후보생 중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 2.7/4.3 이상인 학군사관후보생수의 15%이내 A급 또는 30%이내 C급 학기별 선발
운영위원 회*장학금	일정액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거나, 장학 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 장학범위, 장학금액, 장학기간, 장학조건 등은 장학금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
재일교포 미래희망	A	○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의 재일본 제주출신 교포자녀로 지원한 합격자 중 입학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 - 지원기간: 정규학기(수업연한)
WISET	A C	○ 이공계열 여학생 중 WISET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선발 - 성적 2.7/4.3(신입생 무관) 이상인 자 - 학기별 A급 4명 또는 C급 8명 이내 선발

2. 대학원

가. 성적우수(학업성적)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학업성적 우수	D,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대학원별 선발 - 대학원별 등록예정인원 수(초과 학기자 제외)에 비례하여 등급별 인원 선발 - 직전학기 1과목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2.7/4.3 이상인 자 - 복학생은 당해 학기에 선발 제외

나. 복지(저소득층 지원)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저소득층* 자녀지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의 20% 지원 ○ 성적이 2.0/4.3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단,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 성적 조정 가능 ○ 소득8분위(구간) 이내인 자 또는 기타 경제사정 곤란자

다. 특별장학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외국인*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목적인 학생] ○ 지도교수 개인별 재정보증* 학생 수에 따른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미만 : A급 1명 - 5명 이상 : A급 2명 - 없는 경우 : E급 - 지도교수 개인별 재정보증 학생 중 A급이 아닌 학생은 D급 *재정보증 지도교수는 반드시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이어야 함. ○ 신입생은 외국인등록증 제출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 개인별 재정보증 학생 수에 따른 장학생 : 5명 미만은 A급 1명, 5명 이상은 A급 2명 ○ 성적이 3.7점(4.3만점)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 미적용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 개인별 재정보증 학생 중 A급이 아닌 학생 ○ 성적이 3.7점(4.3만점)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 미적용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 개인별 재정보증이 없는 학생으로 성적 3.3점(4.3만점)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 미적용
장애학생*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 장애정도와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원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A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성적 3.3/4.3 이상인 자
	B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성적 3.7/4.3 이상인 자
	C	○ 장애인 신입생
	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성적 2.7/4.3 이상인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성적 3.3/4.3 이상인 자
가족장학*	(공통기준)	○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성적이 2.7/4.3 이상인 자 - 등록금 액수가 많은 학생으로 선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B, E	○ 가족 재학인원이 3명인 경우 B급 1명, E급 1명 선발
	E	○ 가족 재학인원이 2명인 경우 E급 1명 선발
원우회 임원		○ 원회 임원 중 일반대학원장이 학기별 추천 - 성적 3.0/4.3 이상인 자
	B, D	○ 일반대학원 원우회 임원 B급 1명 또는 D급 2명
	E	○ 일반대학원 원우회 임원 2명
학석사연계	G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 중 석사과정 최종 합격자
장학금 운영위원회*	일정액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거나,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 장학범위, 장학금액, 장학기간, 장학조건 등은 장학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

*는 학부 및 대학원에 적용하는 장학금임.

3. 근로장학(학부, 대학원)

종류	등급	선발요건 및 지급기준
교내근로 (학부, 대학원)	시간급	○ 학기별 근로장학생 선발계획(학생복지과)에 의함 - 공개선발 모집기준에 의거 선발 - 운용부서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학생 선발 - 근무일지 작성 확인 및 서약서 제출 ○ 교내근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VII. 등급별 장학금액

등급	장학금 지급액
A	등록금의 100%
B	등록금의 80%
C	등록금의 50%
D	등록금의 40%
E	등록금의 20%
F	등록금의 일정액
G	입학금 면제

※ 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체기준에 따라 장학등급 및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붙임 : 장학금 지급 신청서식 3부. 끝.

(서식 1)

국가고시 등 합격 장학생 신청서

1. 합격한 국가고시 등 종류 :
2. 합격차수 : 1차합격 최종합격
3. 연락처 :

국가고시 등 합격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0. . . .

신청자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 합격증 등 증빙서류 1부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신청자 유의사항>

1. 선발대상
 - 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2. 선발(지급) 기준

구분	장학등급	지급 기간
1차 합격자	A급	2개 학기 지급
최종 합격자	A급	수업연한까지

- A급 : 등록금 전액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최종학년인 경우 1과목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7/4.3이상이 아닌 경우 당해 학기 지급 안함

(서식 2)

20〇〇학년도 〇학기 가족장학생 신청서

1. 가족사항

가족관계	대학(원)	학과	학년	학번	성명	비고
본인						

2. 연락처 :

20〇〇학년도 〇학기 가족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 소속 학과(대학, 대학원) 1개소만 제출

20〇〇. . . .

신청자 : _____ (서명 또는 인)

붙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신청자 유의사항>

1. 선발대상

-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가족이 2인 이상인 학생
 - ※ 가족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2촌 이내의 가족)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최종학년 및 대학원생인 경우 1과목 이상 이수)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 2.7/4.3 이상 취득(신입생은 성적 무관)
 - ※ 성적기준 미달 시 가족 인원 수에만 포함

2. 선발(지급) 기준

구분	선발(지급) 기준
가족 재학인원 3인 이상	B급 1명, E급 1명 선발
가족 재학인원 2인	E급 1명 선발

- A급 : 등록금 전액, B급 : 등록금의 80%, E급 : 등록금의 20%
-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
- 장학금 혜택이 많은 학생 순 선발(신청학생과 무관)

(서식 3)

다문화가족 장학생 신청서

1. 가족사항

가족관계	성명	현재국적	이전국적	비고
본인				
부				
모				
남편				
처				

- ①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었을 경우 본인, 부, 모 칸만 기재
-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었을 경우 본인, 남편 또는 본인, 처 칸만 기재

2. 연락처 :

다문화가족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0. . . .

□ 신청자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신청자 유의사항>

- 1. 선발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족구성원인 학부생
- 2. 장학생 선발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 지급
- 3.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등급	지급기준(매학기 심사)
A급(등록금의 100%)	○외국인 본인은 직전학기 성적이 2.4/4.3 이상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외국인 출생자녀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3 이상
B급(등록금의 80%)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성적이 3.0/4.3 이상
E급(등록금의 20%)	○외국인 본인은 성적이 2.0/4.3 이상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외국인 출생자녀는 성적이 2.7/4.3 이상 ○한국인 부모 출생자녀는 성적이 2.7/4.3 이상 ○신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최종학년인 경우 1과목 이상) 취득해야 함